

「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6월 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6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6월 1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관광문화과장)

가. 제안이유

다양한 문화 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평창군 작은영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2) 영화관 운영 및 이용(안 제4조 ~ 안 제8조)
- 3) 위탁운영(안 제9조 ~ 안 제12조)
- 4) 보칙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지역의 문화접근성을 향상하는 평창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설치 목적 및 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,

운영 방법 및 관람료를 정하였으며,

위탁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

○ 검토결과,

공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**작은영화관의**

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,

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